

의안번호	2215770
의 퇴 인	이수진의원
회 답 일	2026. 2. 10.
추계번호	25C745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0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실태조사 (안 제18조의3)	200	200	200	200	200	1,000	200

주: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의2(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유선·무선·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이하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라 한다)을 할 수 있음(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를 위하여 의료법 제34조의7(전자처방전달시스템은 제외한다)에 따른 비대면 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의무규정
2	안 제18조의3(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6조의2(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	· 추계 곤란
2	안 제18조의3(실태조사)	0	

- (안 제16조의2) 외국인 환자를 위한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은 의료법 개정(2025.12.23.)으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어 국내 환자 비대면 진료를 위한 비대면 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맞추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나 개정안은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2026년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ISP¹⁾를 거친 이후, 그에 맞추어 시스템 구축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의료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18조의3)
- 개정안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 2026년 K-헬스케어 통합 허브 구축 ISP를 위한 비용으로 4억원이 편성되었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운영현황과 의료 해외진출 신고기관 운영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각 조사마다 1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하였음
 - － 의료 해외진출 신고기관 운영 실태조사 : 100백만원
 - 신고기관 운영현황(인력, 매출액, 운영여부 등) 온라인 조사 : 80백만원
 - 자료 항목개발 및 조사 안내(디자인, 홍보, 전화 등), 결과분석 : 20백만원
 - －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운영현황 실태조사 : 100백만원
 - 온라인 홈페이지 및 SNS 등 불법유치행위 실태조사비 30백만원
 -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 50백만원
 - 불법유치행위 실태 파악 집중신고기간 운영 : 20백만원
- 이를 준용하여,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에 매년 2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의료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의료 해외진출 신고기관 운영 실태조사(A)	100	100	100	100	100	500	100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운영현황 실태조사(B)	100	100	100	100	100	500	100
합계(A+B)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